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213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승남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F

5. F

변론 종결 2020. 12. 17.

판결 선고 2021. 1.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G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한 2018. 1. 2.자상속분할합의를 취소한다. G에게,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8. 12. 19. 접수 제300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은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8. 12. 19. 접수 제300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 C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8. 12. 19.접수 제30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8. 12. 19. 접수 제300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442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7. 3. 'G는 원고에게 15,719,920원 및 그 중 15,568,072원에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9.8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자녀들인 G와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들과 G는 2018. 1. 2.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F이,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E이,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 C이 각 1/2 지분씩,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이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9. 피고들 앞으로 2018. 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대출계약이 체결되어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불과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대출만료일이 경과하여 대여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G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G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망인의 자녀들인 G와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1/6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합계 195,060,200원¹⁾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다) G의 특별수익의 존부 및 가액

을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G(개명 전 I)가 혼인할 무렵인 1992. 3. 3. 수원시 J, K, L 지상 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G가 최초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1992. 9. 15.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당시 G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G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G는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수익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시의 가액은 81,195,4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아파트의 멸실로 정확한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산정 시점만을 다두고 있을 뿐 특별히 가액산정 방식을 다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산정한다).

라) G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앞에서 본 망인의 상속재산과 G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G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G의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G의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N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G의 구체적상속분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간주상속재산에 따른 법정상속분액보다 특별수익액이 더 커서 결국 G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다.

○ 간주상속재산

276,255,600원(=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 합계 195,060,200원원 + G의 특별수익81,195,400원)

○ G의 법정상속분액

46,042,600원(= 간주상속재산 276,255,600원 × G의 법정상속분 1/6)

○ G의 구체적 상속분 0원

0원(법정상속분액 46,042,600원보다 특별수익액인 81,195,400원이 더 크므로,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

다. 소결

결국 G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G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혜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충남 공주시 답 2970m²
2. 충남 공주시 답 493m²
3. 충남 공주시 답 2968m²
4. 충남 공주시 답 2015m²
5. 충남 공주시 답 1018m²

이상 공유자 1/6 지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 등 시가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위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그 가액을 산정한다.